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68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전진숙·서미화·조인철

박정현 • 황정아 • 정진욱

채현일 • 이수진 • 오세희

강선우 · 김남희 · 이광희

이재관 · 임미애 · 허 영

양부남 • 소병훈 • 김영배

장종태 • 박희승 • 최민희

김 윤·문대림·민형배

서영석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추진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

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되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희귀·중증질환자의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의료라는 공공재를 적시 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 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 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공공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다)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1.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		
	호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		
	책적 추진이 필요한 공공의		
	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방의료원을 포함한다)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u>사업</u>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